



부산광역시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사회적 거리두기(개편) 1단계 및 방역수칙 일부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

1. 관련근거

-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-12318(2021.6.24.)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-252호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0199(2021.6.28.)

2. 코로나19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결과 등을 고려하여, 2주(7.1.~7.14.)간 이행기간을 두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적용기간: **2021.7.1.(목) 0시 ~ 2021.7.14.(수) 24시**
- 주요내용
 - (사적모임) 8명까지 허용

(사적모임 적용 제외)

- ①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* 등이 모이는 경우
 -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 - ② 돌잔치, 회갑·칠순연, 기제사의 경우 16명 까지 가능
 - (단,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는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 전문점 방역수칙에 따름)
 - ③ 예방접종 완료자(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
 -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)
 - *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1차만 접종한 경우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음
- ?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

- (방역조치 강화)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적 PCR 검사(2주마다 1회)

- (마스크 착용) 1회 이상 예방접종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다중이용시설 밀집하지 않는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

▷ 우리시: 접종 무관 개장한 해수욕장, 5대 도심공원 **마스크 착용 의무**(행정명령 별도 고시)

3. 행정사항

- 구·군에서는 **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조치 요약표**를 고시할 때 **문의처를 구·군 담당자 연락처로 변경**하여 고시하고, **기본방역수칙(붙임1)**과 **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(붙임2)**, **모임행사, 대중교통 방역지침(붙임3,4)** 및 Q&A를 반드시 같이 고시 바랍니다.

※ 기관내 전부서로 공문 시달 및 전직원 공람 조치 요망

- 각 부서 및 구·군에서는 소관 시설이나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,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, 중대성 등을 **종합적으로 고려**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즉시 **집합금지**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다중이용시설 점검시 **출입자 수기명부보관기간(4주) 초과 여부** 점검하시고 위반시 **현장 계도 후 즉시 파쇄 또는 회수 조치**

-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사회재난과)는 시설별 관리부서 및 구·군, 경찰 등과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상황 점검(실적 제출)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요약표 1부
2.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등 각 1부
3.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&A 1부. 끝.

부산광역시청

수신자 본청, 소방재난본부, 직속기관, 사업소, 16개 구·군 보건소, 공사공단, 구·군, 부산 지역대학, 시의회, 출자출연기관(컨트리 제외), 부산교육청, 부산경찰청

전결 06/30

담당자 **석태진** 감염병총괄팀장 **이정임** 시민방역추진단장 **이소라**

협조자

시행 시민방역추진단-12759 (2021.06.30.) 접수 학생지원팀-1961 (2021.07.01.)
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, (연산동) / <http://www.busan.go.kr>
전화 051-888-3334 전송 051-888-3339 / tjseok@korea.kr / 공개